

수원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83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최승만

변 론 종 결 2021. 3. 31.

판 결 선 고 2021. 5. 12.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50852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66.96/23,306 지분에 관하여 2018. 9.

14.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66.96/23,30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10. 10. 접수 제1593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3. 1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966.96/23,306 지분(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F의 지분 1/4 중 1,332.32/23,306, G의 지분 1/4 중 1,322.32/23,306, H의 지분 3/20 중 991.74/ 23,306, I의 지분 1/10 중 330.58/23,306)에 관하여 2013. 11.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4.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J의 지분 1/4 중 1,322.32/23,306에 관하여 2013. 11.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3) K 주식회사(이후 ‘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K’이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07050호로 C을 대위하여 위 F, G, J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합계 3,966.96/23,30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0.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K은 2018. 9. 17.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 2008. 10. 15.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6950호로 C을 상대로 'D의 C에 대한 2005. 10. 10.자 대여금 채권을 2006. 4. 18. 양도받았다'며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0. 5. 26.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0. 6. 18. 확정되었다.
- 2) 원고의 처 E은 2009.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6944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0. 1. 19. 'C은 E에게 16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0. 2. 10. 확정되었다.
- 3) 위 E은 2013. 11. 20.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C에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C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

- 1) C은 2018. 9. 14. 피고와의 사이에, '2018. 9. 14.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1,176,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8. 10. 10.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8. 9. 1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의 재산 현황

- 1) C은 2009. 12. 1. 해산간주 되어 2012. 12. 3. 청산종결 간주되었으나, M이 2018. 9.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를 지속하기로 결의하였다.
- 2)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당시에 C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는 약 30개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으며, C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당시와 현재 모두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내지 1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당심 증인 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채권자 중 하나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3.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부존재

- 1) 원고는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지급명령 이외에 실질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원고가 D 및 E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신탁에 불과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3) 원고가 E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채권은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의 사해행위 불성립

- 1)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은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져서 C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는 다수의 가압류가 존재하여 이미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새삼스럽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3) C은 채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의 사해의사 부존재

1)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C와 공모하였다면 C이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대신하여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당시에 C의 대표이사였던 M과 감사였던 Q 및 위 M이 소개한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들이 추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에 스스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는 등 그 가압류 말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존재 여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갑 제1,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P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D와 E의 C에 대한 채권이 각각 존재하였던 사실, D와 E의 C에 대한 위 채권들을 원고가 각각 양도받았고 그 양도 사실을 C에게 각각 통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며, 원고 및 E의 C에 대한 각 지급명령이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P의 수감 등으로 인해 무변론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을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 역시 무변론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가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신탁인지 여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D, E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각각 2006. 4. 18., 2013. 11. 20. 양도받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C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심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던 점, 원고가 2018. 9. 14.에 이루어진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을 미리 예견하고 2006, 2013년경에 각각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에 대한 지급명령 당시에 대표이사였던 P이 수감 중이었고 달리 지급명령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확정되었던 사정은 피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8. 9. 11.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M과 사촌이라는 사정 역시 2006, 2013년경에 각각 이루어진 원고의 위 채권 양수의 목적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지 채권추심 등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D, E으로부터 각각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C에 대한 일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가 E으로부터 양도받은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E이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2010. 1. 19. 지급명령을 받아 2010. 2. 10.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지 않은 2019. 2.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E으로부터 양도받은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며,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통해 그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한 변제의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대물변제가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거나 대물변제로 제공된 재산의 가치가 피보전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물변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그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 제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과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액에 비추어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 오히려 C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가압류가 존재하여 이미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 C의 채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거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당시에 이미 C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가 C이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에 부수되는 조건에 불과하고 피고의 사해의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점,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존재하는 가압류의 취소 신청을 하는 등 실제로 그 가압류 말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당시에 C의 대표이사였던 M과 감사였던 Q 및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들이 추후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위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기창, 판사 이지형, 판사 최호열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용인시 기흥구 N 입야 15,745㎡
2. O 입야 864㎡. 끝.